

##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Privacy Shield): 스스로 대비할 것인가

2016년 3월 3일, Yaniss Aiche, Reid Whitten

2016년 2월 29일 유럽위원회와 미국은 유럽 개인 정보를 미국에 전송, 공유, 처리 작업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세부 조건을 공개하였다. 본 시스템은 기존에 EU에서 미국으로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했던 세이프 하버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으로, 세이프 하버 시스템은 EU의 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각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적절하다는 본인 인증을 통해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전에 게재한 것과 같이, 세이프 하버 시스템은 지난 10월 유럽사법재판소의 슈렘스 사건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유럽위원회와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 사이에 체결된 본 협약은 미국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참여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본 재협상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본 시스템 또한 별개이면서도 서로 연관이 있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시스템, 2) 집행과 감시를 포함하여 미국 정부 기관이 EU 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겠다는 약속.

이하에서는, 현재 제안된 시스템을 EU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논리적인 절차를 요약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조건 준수를 위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조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최종 장애물

유럽위원회는 프라이버시 쉴드와 미국 정부의 약속이 미국에서 개인 정보 보호가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적절성 결정’이라고 불리는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적절성 결정’은 유럽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채택하기 전에 EU 회원국의 정보 보호 기관들(DPAs)과 유럽 의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 DPAs의 일정을 보면 4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많은 토론이 예상되지만, 유럽 의회가 궁극적으로 최종 결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프라이버시 쉴드 기업들이여, 스스로 대비하라

먼저 기업과 개인 정보의 최종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회사들이 세이프 하버의 원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에 유럽위원회가 우려와 불만을 표현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쉴드는 세이프 하버 시스템에서 한 발 나아가 미국 회사가 유럽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집행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한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세이프 하버 시스템과 같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한번 등록을 하면 프라이버시 쉴드의 의무 사항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럼 프라이버시 쉴드가 발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쉴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영향을 미칠 주요 의무 사항의 검토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라이버시 쉼드에 따른 기업의 의무와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를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EU 내 개인에게 명확히 제공. 여기에는 미국 상무부 프라이버시 쉼드 홈페이지 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당사자의 개인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에 따른 개인 정보 공개 조건 및 제 3 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기업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 기업의 정보 수집 목적과 처리 활동을 명확히 서술
- 해당 기업의 운영에 대해 문의 또는 불평하는 개인에게 45 일 이내에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개인의 불만사항이나 분쟁을 무료로 조사, 해결해주는 독립적인 처리방안 제공
- 해결되지 않은 불만사항이나 분쟁에 대해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 약속
- 프라이버시 쉼드 시스템 감독, 참가 기업에 대한 금지 및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진 미국 상무부의 문의에 즉각적으로 답변
- 기업이 정보를 보관하는 동안에는 약정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
-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포함한 기관의 집행 조치, 해당 기업이 관련된 규제 위반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

또한 참가 기업들은 제 3 자에게 전송된 정보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제 3 자가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며, 정보를 전송하는 회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정보 보호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은 제 3 자가 권한 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적합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미국 정부 기관의 약속

두번째로, 슈렘스 판결은 미국 당국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감시 활동에 대한 안전장치와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이프 하버를 무효로 하였다. 이 문제는 상무부, 운수부, 국무부, 사법부 및 국가 정보부를 포함한 여러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발표한 일련의 정치적, 절차적 약속을 통해 폭넓게 다루어졌다. 즉, 이러한 약속은 명확한 제한 설정, 안전장치 및 감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례 검토 약속, 즉각적인 집행, 구속력 있는 중재, DPAs 와의 협력부터 미국의 통신 첩보와 관련한 EU 내 개인의 염려 사항을 고려하여 미 국무부가 새로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쉼드 옴부즈맨 기능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EU의 개인들이 미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구제 방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 기타 주목할만한 변화

미국 상무부는 추가적으로 EU 전역에서 각 지역 DPAs 와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화해 절차를 밟아왔다. 예를 들어, 상무부는 전용 연락처를 개설하여 EU 개인의 불만사항이 90 일 이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DPAs 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EU 개인들은 미국 주 법원에서의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 집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쉐드하에서 미국의 정보 접근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비례성’, ‘필요성’, ‘합리성’ 원칙에 기초하여 허가될 것이다.

## 명확해진 미래?

우리는 이미 프라이버시 운동가들이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제 2의 슈렘스 사건과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EU-미국 프라이버시 쉐드가 5~7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쉐드는 여러 의무 사항과 잠재적으로 강력한 집행 절차를 수반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보호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요구 조건을 어떻게 가장 잘 준수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한다.